

✓ 법정 당연제외자

○ 근거 : 민방위기본법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7조

제외 대상	제 외 자	신 고 자	
		사유발생	사유소멸
군인·경찰 공무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인, 예비군 ○ 현역병 입영대상자 ○ 보충역 입영대상자(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기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) 	직권 처리 또는 본인	본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, 군무원, 청원경찰, 등대원, 의용소방대원 ○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	직장의 장 또는 본인	본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○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*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	본인	본인
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(학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*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,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○ 경찰대학, 한국과학기술대학(KAIST) ○ 대학원, 대학원대학(석사과정에 한함) *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○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※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직업학원 등은 제외 	학교의 장 또는 본인	본인
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	시설의 장 또는 본인	본인
심신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·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○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○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	본인	본인
만성허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	본인	본인

법정 당연제외자, 금년(2025년) 교육 면제 대상자일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(재직/재학증명서 등.)

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대리인 제출 가능. 팩스 031-6193-6328/메일 starring123@korea.kr)

단, 직권처리가 가능한 군인/예비군은 문의만 해주셔도 됩니다.

※ 간혹 당연제외자로 기존 제출하였음에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 경우 제출연도와 이름,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시어 031-6193-6028로 문자(문자수신가능) 바랍니다.

✓ 참고사항

○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

신체등급	병역처분	군복무	예비군	민방위
1~3급	현역	0	0	0
1~4급	보충역	0	0	0
5급	전시근로역	X	X	0
6급	병역면제	X	X	X
7급	재신체검사	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		

- 군 복무 후 예비군 편성; (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**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**)

ex) 2012년 1월 15일 전역 > 2020년 12월 31일 까지 예비군 > 2021년 1월 1일부터 민방위 편성

- 민방위대 편성이후 5급 **전시근로역**으로 판정되면, 당해연도에는 편성만 하고 익년도부터 **교육훈련 실시**

○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· 면제 신청

- 민방위 집합교육의 경우 관할 교육장에서 듣지 못하더라도 **전국 교육장에서 수료**가 가능합니다.

(타 지역 교육장에서 수료 후, 해당교육 담당자에게 타 지역 민방위대원임을 이야기해주시오.)

- **교육훈련 면제자/교육을 듣지 아니한 자의 경우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.** (단,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의 경우로 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대책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상향됨)

면제사유	유예사유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후 집행 중인 자 (교도소 수감자) 2. 3개월 이상 외국여행 혹은 체류 중인 자* 3.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재해의 예방·응급대책·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자 4. 의료·전기·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자. 단 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만 면제한다. (응급구조사 - 심폐소생술 과목 면제) 5.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자.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- 의사진단서 제출. 2.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-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- 일시수감(구치소 수감자) -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(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인가를 받은 재취업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) - 배우자 출산 전후 5일(출생증명서 사본제출) <p>*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함. * 유예사유 소멸 시 재 소집. (단, 당해연도 교육운영 기간 중 지속적인 유예사유 발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, 당해연도 교육 면제처리.)</p>

* 당해연도 교육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해야 하며, 해당 기간 내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 (본교육,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) 일시 귀국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해외체류일에 합산하며, 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제외한다.

* **해외 장기체류 대원**(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연중 3개월 미만인 대원)의 경우 출국 전 해외파견 근무 명령서 등 해외 장기체류를 증명할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(**최초1회**)